#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43

발의연월일: 2023. 4. 5.

발 의 자:문진석・김병욱・위성곤

이정문 · 김병기 · 김두관

최혜영 • 전재수 • 이성만

서영석 · 송재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와 사회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재난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대응과 수습이 필요하므로 재난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모든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단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재난 안전관리교육 실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 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방법 및 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행 < <u>&lt;신 설&gt;</u>	제29조의3(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이조에서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교육을받은 것으로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문인력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난안전관리교육

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

   적 평가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 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 <u>평가</u>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 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방법 및 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